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總會會員委員會非專職

(會員委員會非專職 回報)

會員委員會非專職

목 차

1.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47
나)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
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9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4월 27일 (월요일) 15시 30분

의 사 일 정(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

부 의 된 안 건

- 1. 경과보고(지방행정사무관 김용환)
- 2.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해위원 외 3인 발의)
-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이상일위원 외 3인 발의)
-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30분 개회)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지방행정사무관 김용환 : 지금부터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32분)

1. 경과보고

○ 지방행정사무관 김용환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사무관 김용환입니다.

의사과장의 교육 출장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임시회 의결의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30일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을 '92년 4월 4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92년 4월 4일 등 조례안 발의자이신 권혁풍위원 외 3인 교육위원이 변의안을 제출하여 이송을 유보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8회 임시회때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정이 유보되었던 충청북

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상일위원 외 3인 교육위원이 발의하여 '92년 4월 11일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박병해교육위원 외 3인위원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으며, 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변의안은 등 내용이 의사국의 하부조직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교육감에게 협의 요청중에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8일에는 직속기관인 충북학생야영장에 대한 방분과 신설계획인 음성학생야영장 및 동 야영장 분원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2.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4월 27일

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상일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박병해위원 외 3인이 발의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초 발의자였던 권혁풍교육위원 외 3인 위원회 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하여, 본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의결을 하여야 되는 바, 동 번안동의의 내용이 의사국의 하부조직을 직접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의결하기 전에 교육감과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차후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3.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박병해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사회대로 나옴)

○ 박병해 위원 : 박병해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명 위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1992년 4월 29일 11시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교육감, 초·중등국장, 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박명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일전에 너무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

그 개정사유는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고자 학생야영장이 없는 읍성에 학생야영장을 설치코자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92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음성군 맹동국민학교 봉동분교장과 원남국민학교 조촌분교장을 음성학생야영장으로 전용 설립코자 음성군 맹동면 봉동리 335번지와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에 음성학생야영장 및 동 야영장분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별첨의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조례안의 별표에 신설되는 음성학생야영장과 음성학생야영장분원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구조분 내비표에도 이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야영장 설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1년도에 음성군내에 초·중·고학생 천100명이 보은군이나, 증원군이나, 또는 청천야영장, 또는 진천에 있는 종합야영장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로 이렇게 초·중·고학생들이 야영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마침

이미 말씀을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교가 폐교함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야영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동과 조촌 두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이동 야영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야영활동은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요즘 부모의 과보호로 나약해진 청소년을 보다 강하고, 청순하게 키우고자 하는데 의의를 갖습니다.

그렇기 위하여 2박3일간 실시되는 야영기간중 한 곳에서 있지 않고, 2일째는 걸어서 이동하여 새로운 곳에서 숙영하는 가운데 강인한 심신을 키우고자 합니다.

즉, 봉동에서 1박하며 인근 저수지에서 수상활동 즉, 카누나 서핑이나 보트, 이러한.....

구명조끼를 착용해서 하며는 안전에도 별의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촌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수련방법입니다.

설립코자 하는 봉동은 기존 시설이 부지가 7천150평방미터로서 평수로는 2천163평이고, 교실이 여섯칸이 비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서 수상훈련을 하는데 적격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조촌은 기존 시설이 부지가 만천881평방미터로서 교실이 2층 건물로 여덟칸이 있고, 강당시설이 있어서, 특히 교실도 기존

시설이 매우 훌륭합니다.

건축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뒷산에서는 곡기, 모험 시설장으로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음성학생야영장 및 동 야영장 분원을 새로 신설하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현지 확인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충청교육국장을 향하여)들어 가세요.

(15시 45분)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이상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사회대토 나옴)

○ 이상일 위원 :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교육위원님!

오늘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을 발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어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정착의 단계에 접어드는 이때 교육위원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게 됨은 교육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그 동안의 시행상 미비점 등을 개정된 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시 각 시·도가 협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주요골자와 참고법령, 그리고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규칙안 본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3인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는 신설야영장의 설립여부를 현지 확인 후 결정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규칙은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심사 소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등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p>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p> <p>○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p> <p>홍신회위원, 이근수위원 두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p> <p>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홍신회, 이근수 두분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p> <p>(의사봉 3타)</p> <p>두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다.</p> <p>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p> <p>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29일 11시에 개최되고, 내일은 음성학생야영장과 동 야영장 분원 신설위치를 현지 확인하고, 충청북도 학생야영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5시 55분 산회)</p>
<p>○ 출석위원수 : 11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회,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출석공무원 : 17명</p> <p>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음, 관리국장 김근화,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p> <p>○ 의사일정(안) : 별첨 1.</p> <p>○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p> <p>○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 3.</p>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4월 29일 (수요일) 11시 00분

의 사 일 정(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의안의결
 - 가.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방행정사무관 김용환 : 지방행정사무관 김용환입니다.

의사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4월 27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사수위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이상입니다.

(11시 01분)

1.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안)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질의 신청)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 이상일위원입니다.

어제 야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조촌분교와 봉동분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음성교육청에서 나눠준 야영장 운영계획서와 지금 음성야영장 설립에 관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그 안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그 두개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13명이 필요한 것으로 정원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건에 보면 야영장장 교육연구사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5명으로 두개의 야영장을 운영

할 수 있을런지 하는게 좀 의심이 가고,

두번째, 소요경비가 3억6천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6천백만원 중에서 자체 예산이 2억원, 보조금이 1억6천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산이 조달이 될런지 두가지하고, 또 세번째는 어제 현장에서도 주민대표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영장에서 너무 노출을 하고 다닌다든지, 또는 농장물을 훼손 한다든지 해서 주민과의 마찰은 없겠는지 하는 서너가지가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위원석에서 거수)

○ 의장 김영세 :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시죠.

○ 부의장 김광수 : 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 의장 김영세 : 예, 야영장에 관한 질문 전부 하시고서 답변 들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김광수입니다.

어제 음성 봉동분교, 또 조촌분교, 야영장 설치한다는 데를 저희들이 다 답사를 하고, 또 이렇게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 봤을 적에도 그 폐교가 된 학교에는 그러한 무슨 시설을 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꼭 좋으리라고 하는 그

런 생각을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으로 본다고 해도 좋고, 또 음성군에는 충청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음성군에만 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야영장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번 회기에 이것이 상정이 되려다 일단 문제가 돼서 유보했다가 이번에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의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안으로 상정을 할 적에 사실 관계공무원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런 교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안거쳐야 되는 것인지, 또는 먼저번 공문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의 그러한 그 공문으로써 대체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집고서 넘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그럭저럭 해가지고서 먼저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교육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또 그런 일을 협조하고, 또 교육발전 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저희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무엇인가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까지 야기 된다고 해서야 그

것이 도저히 피차에 본의에 문제가 되고, 피차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되는게 아닌가 봐집니다.

앞으로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게, 좀 철저하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관계 국장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넘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야영장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그러면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초촌분교와 봉동분교 폐지교에, 음성야영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관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원 관계와, 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음성교육청에서는 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정원을 13명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중등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결과 옥천이나 증원이나 청산야영장도 역시 연구사 1명, 별정직 1명, 기능

직 1명,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솔 교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정원이 필요치 않다, 현재 3개 야영장도 3명의 관리인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음성야영장은 두군데서 실시하는 관계로 다섯명으로다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다섯명만 가지면는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애당초에 두군데에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흔은 6개 교실에, 강당 2교실해서 8개 교실, 그 다음에 보통은 6개 교실, 그 내부 시설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침상까지도 전부다 마련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3억6천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번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해서 야영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텐트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해서 이것을 전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침상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현재 교실은 오락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취사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 일부도 만드는 것, 거기까지는 좋다, 그리고 식수를 개발하는 것, 현재 거기에 매 기마다 100명내지 200명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야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식수가 부족할 염려가 있다, 가물적에는 식

수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해서 판단을 내린 결과 2억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내려서 본청에 요구한 부족액 1억6천만원은 보조하지 않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음성교육청의 자체 예산 2억원 가지고서 두군데 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촌분교에는 과거에 급식학교로다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현장도 가보았습시다마는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자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학생들이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마련돼 있는 급식기자재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본청에서는 보조는 없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은 음성교육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었고, 저희들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두 학교가 다 돼교가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문화에 대한 차단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야영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서 부터는 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조흔 폐교 주민들의 대표 최용구씨, 거기 이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의견도 정말로 학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 건물이 계속 유지되고, 또 학생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며는 환영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봉동 폐교 주민대표 김창기씨도 역시 같이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그 주민을 대표하는 최용구씨나 김창기씨의 의견을 들어 봐도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예.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리고 또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이 음성야영장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여러가지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진지하게 사과 말씀을 올렸고, 저도 엇그저께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황을 말씀 올리면 아마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담당 계장님의 인사 이동이 있었고, 또 바로 안계장님께서 사무를 인수 받고서 그 때에 모든 서류를 갖춰서 교육위원회에 제출코자 준비를 다 마치고난 다음에 아마 경상북도인가 경상남도에서 질의 조복한 그러한 내용이 와서 거기에 대해

서 아마 그것을 갖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절차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삼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중등국에 속해 있는 각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노력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어제 두군데 다 관계관과 같이 교육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타당하다, 또 음성군에는 학생야영장도 없고 이래서 폐교되는 관계, 또 동시에 그러한 장소와 시기와 폐교,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얘기가 되고 더욱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이 자체에서 조성된다는 것 하나, 이래서 하는데 여하튼 예산이 자체에서 조성이 돼서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꼭 그렇게 유념을 하고서 저희들도 이걸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은 지금 외부상으로는 좋다는 것인데, 사람의 심정이 변하기도 쉬운 것이고 설치한 다음에 뭔가 보장책을 받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예견되는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을 잘

예상하셔서 나중이라도 지금은 이제 의견상의 문화시설 자체도 존속되고, 문화 혜택도 받고 이런 거니까 좋다고 하지마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참 어떤 일이 있을런지도 그건 장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주민들의 가령 어떤 불평사항이라든가, 또 이장이 대표해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마는 개개인의 그 주민들한테 뭔가 보장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앞날에 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과의 직접 관계되는 것은 차후에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다가 이의가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지금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서 인문계를 실업계로 전환했을 적에 동문과 지역, 또는 그 육성회 임원님들, 이분들에 대한 서면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철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음성야영장도 설치가 된다고 하며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받아 놓아야 하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하실 분 계십

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침묵)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생야영장 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 의장 김영세 :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본 개
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
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
님에 한하여 앉아계신 좌석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진행은 일괄질문·일괄
답변 방법도 있는데 여기 질문하실 분이 몇
분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명확히 선을
그어서 하기 위해서 오늘은 한분 질문하시
고 한분 답변하는 것, 일대일 질문과 답변
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광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이 질문서를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 감사수위원님께서 오늘 출
석을 못하신다고 저보고 대신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그 모든 예
산, 또는 그 모든 운영자금 이런 것이 연간
'92년도에 3천 한 5백억원 정도 되는 줄 알
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고, 또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 실패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까요?

○ 의장 김영세 :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눔)

○ 재무과장 고일영 : 재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그 금전출납은 금고로 하여금, 농협으로 하여금 출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휴자금에 대한 예금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양도성예금이 2회에 50억원씩 한 일이 있고, 또 정기예금은 9회에 걸쳐서 275억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평균잔액)이 양도성예금하고, 정기예금 합쳐서 39억원이 1일 평균, 그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농협에 예치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양도성예금이 평균 66억원, 기업금전신탁이 평균 99억7천만원 해서 1일 평균 166억원을 장기성예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현재 예치현황은 양도성

예금이 130억원, 기업금전신탁이 58억원 해서 지금 현재 188억원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이거 예금되는 것은 수시로 좀 다른가요?

이것은 정기성예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이렇게 예금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저희 양도성예금은 이율이 14%입니다, 언.

아주 최고 금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91일 이내에는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해약을 하려는 2.5%정도 이자를 아마 불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전신탁은 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20일내지 29일을 예금하면 연 5%에 이자가 붙고, 30일내지 59일을 하면 7%, 그리고 60일내지 69일을 하면 9%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비교적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양도성예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써야될 일이 있다던지 하는 것이 예견되는 자금은 기업금전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런데 이것이, 금고계약이 농협하고 해야된다고 하는 어떠한 교육부의 지시사항인가요, 어떻게 농

협하고만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 재무과장 고일영 : 종래에는 그 금고를 대행할만한 그런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농협하고 계속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농협하고 계약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꼭 농협하고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옛날의 관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것이군요?

○ 재무과장 고일영 : 관례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이 타행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수가 지금 농협이 121개가지 도내 점포가 있고, 충북은행 같은데는 4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하기 때문에, 타행으로 옮겼을 때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러니까 농협에다 꼭 하라고 하는 그런 것 만은 아니구만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다른데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군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러면 체신부 산하에 우체국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금고는 지방

계정법에 금융기관을 그 금고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2개 은행에다가 계약을 할 수도 있겠군요?

한군데만 꼭 할게 아니고, 2개이상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재무과장 고일영 : 글썽요, 저희 상식으로는 금고계약을 하려는 대상이 한개가 돼야지 두군데 해가지고 원활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양도성 같은 것 장기예금이 필요한 것 같은 것은 보다 더 금리가 좋은, 지금 17% 이상 주는 그런 금고도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예금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 수시로 출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그러한 농협에다가 하고, 장기성을 요구하는 것은 금리가 더 좋은 데다가 예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좀 챙겨보셔서 말이지요, 연간 금

리 차이가 아마 이 청주에도 교육청이 양도성 같은 것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든가, 또 증복금융이라든가 이런데 할 것 같으려는 지금 17%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보다 17%라하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것이 50억이라든가 작년도에 2백75억 정기에금을 했다는데 이것은 상당한 그 금리차이가 나서 우리 이 교육청 당국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보다도 더 깊이있게 챙긴다고 할 것 같으려는 이러한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을 그냥 안일하게 옛날 해왔던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둔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둔다고 할 것 같으려는 좀 이러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도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금고계약을 한군데만 꼭 해야 된다',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챙겨봐도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은 보다 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안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직에는 응분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이상 질문 없으시

죠?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 부의장 김광수 : 아니, 답변보다도 답변을 들으려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을 하려는 그 금고대행기관이 유휴자금까지 모두 그 금고 기관에다가 예치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휴자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금을 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려는 아마 이 금고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필요할 때 돈은 꺼줄 수 있고 자금은 만데 빼돌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농협이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판국에 사실 농협을 돕고, 농협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CD(양도성)예금도 농협이 14%고, 증복은행이 14.2%입니다.

그리고 증복부금이 15.9%, 그리고 17% 주는데도 있습니다.

대한투자신탁같은데 거기는 세금을 공제 한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이 기관에서 하려는 세금공제 안해요.

개인이 하려는 세금을 공제하는데 국가기관이라든가 기관에서 하려는 세금공제 안합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그렇게 되나요.

(잠시 집행기관석에서 직원의 메모지를 전달 받은 후)

어제 저희가 투금에다가 직접 문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세금공제를 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큰차이는 안난다 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사 같은데는 위험부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다가 이 막대한 자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부담이 따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부의장 김광수 : 투자신탁 같은데가 위험부담을 느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내의 각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여기 대한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치만 하는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사정이 좋아가지고

참 160억원 정도를 계속 정기에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 차입을 할 때는 10% 정도 이자를 물어주고, 저희가 자금이 남을 때에는 14% 이자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계약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을 뿐더러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금을 그때 그때 타행으로 빼돌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여기 엇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충북대학교 의료원에 농업에서는 5억원어치 무슨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투자를 해주면서까지 금고설치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고설치하기 위해서 5억원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래해 주는 자체만 하더라도 뭐고맙다고 할텐데 뭘 거기다가 말하자면 돈을 적에 당연히 예금하는 것이고, 돈을 적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기채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하고, 못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지금 그 충북대학교 병원 특별회계 금고유치를 위해서 발전기금 5억원을 내놓았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북은행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금고유치를 위해서 서로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하다가 보니까, 5억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소간에 농업학교만이라도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의견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 부의장 김광수 : (웃으며)신문에 난 것이 바람직 한것은 아닌데 어떻게 신문에 그런게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데 여하튼 잘 챙겨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되셨죠?

○ 부의장 김광수 : 예.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질문 순서를 잠깐 바꿔서 질문내용이 간단한 장중호 위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중호 위원 :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 시기가 아니면서 적당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봄·가을로 흔히들 보며는 학생 아이들 소풍이라 할까, 수학여행이라 할까 짧게는 당일 길게는 뭐 한 4일씩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본다면 무슨 도시로

간다는지, 그러지 않으면 경주 불국사, 뭐 이렇게 몇 군데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방향을 좀 달리 할 수 없는가, 특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곳, 그러나 사실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있어야 할 그런데를 말하자면 소외시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안동에 가보며는 퇴계선생님의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며는 그 분의 장서도 있지만 서도 생활하신 그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우리가 참 유학자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분에 대한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가서 본받는게 좋지 않을까, 특히 퇴계학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동 하회에 가며는 임진왜란때 그 하회 류성룡선생님이 나신 그 부락에 생가가 그대로 있고, 또 그 옆에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어서 소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분이 평소에 가지신 소장품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내린 교지, 또 올린 글, 이런 걸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옛날에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풍기에는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려는 아이들한테 유익한 점이 있을거고, 그 바로 이웃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는 부석사가 있습니다.

순흥 부석사, 그 부석사도 있고 겸해서 그 쪽으로 가자면 단양이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단양팔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백산 천문대도 있고, 또 동굴, 이런 것을 좀 이번에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하는 목적지를 조금 종전의 그것과 달리 변경해서 이걸 권장해 주실 수는 없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결정하는 모양인데, 교육청으로서 이러한 것을 좀 권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더욱 이 학생들 보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선생님들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산서원이라든지, 류성룡선생의 생가, 그 하회마을, 또는 부석사, 부석사는 혹시 간분이 더러 있을지언정, 제가 단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참고로 이렇게 물어보려는 안가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특히 한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이 먼저 이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하는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선생님들 여름 휴가라든지, 이것 좀 권장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과거 유성종교육감님이 계실적에 아마 4, 5년전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해서 그 분도 그 참 좋은 안인데 한번 권해보겠다, 하시고서 이걸 실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선생님들을 꼭 한번씩은 이렇게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고, 아이들 수학여행도 이런 곳으로 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장충호위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장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학생 수학여행 또는 소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에서도 '90년도 4월 20일자, '91년 2월 13일자, 금년도에는 2월 24일 날짜로 생활지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지금 장충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도내학생들이 우선 우리 고장을 먼저 알고, 타시·도의 고장을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단양팔경이라든지, 또는 속리산이라든지 여러군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풍이나, 또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은 학교장 재량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과연 숙소해결 문제, 또는 경비문제 등등을 참작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수시로 현지를 답사하고 이래서 역사유적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전적지라든지 이런데를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장의 명승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장충호위원 또 보충질문 하실건가요?

○ 장충호 위원 :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재가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부터라도 좀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다 거기에 다녀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 증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것을 보면, 속리산에 이렇게 오고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부산서 오고, 저 멀리서도 와요, 그 속리산에 있는 그 분들이, 그 여관을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 그 학교가서 로비를 얼마나 하였느냐에 따라서 항시 그 수학여행의 행선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 여기 충북권도 그것이 예외는 아닐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수학여행 간다고 할 것 같으려는 학생들이 그 때는 해방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나 봐 집니다.

먼저번 얼마 전에 보은 속리산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거기서 싸워 가지고서 하나가 죽은 그런 사례도 우리가 봤습니다.

역시 수학여행을 가는 그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다 챙겨서 할테지마는 만에 하나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충북도에서는 철저한 그러한 대비를 해서 수학여행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증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에는 박병해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박병해입니다.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대책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각급 학교에 학교버스를 자주 이용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은 관리국 총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아동들이나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미연 방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장은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지금 버스 대수를 대충 알아 보니까, 138대라고 하는 꽤 많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차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 수는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알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도의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그 발간되는 책자 활용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실적도나 보급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금년 1년간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13회에 종류로 따지면 13종이 되겠죠.

그 열세번에 걸쳐서 15만7천2백부가 발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15만7천2백부라고 하는 많은 부수가 각 학교에 배부가 되는데, 이 배부되는 책자들이 학생교육이나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 그 활용도는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며는 그 실적은 '91년도분이라도 발표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질문 끝나셨습니까?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관계관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 문제와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뭔가", 그 다음에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전문제의 관장과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특수학교는 초등장학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안전 문제는 중등장학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두번째, 안전은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버스 운행 내규를 학교마다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장 운행 허가 후에 운행, 속도제한 문제와, 승차장별 출발시간 준수, 도로교통법 준수 등입니다.

두번째, 승차지도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번교사를 정해서 승하차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내용은 교통안전 지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교과시간, 특별활동시간 등에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큰 세번째로 이용 학생수 문제입니다.

아까 현재 138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버스가 110대입니다.

공·사립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6천768명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는 버스가 51대 이고, 이용하는 학생은 천750명입니다.

중학교는 학교버스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16대 이고, 이용하는 학생은

천290명입니다.

특수학교는 13대 이고, 이용하는 학생이 699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버스가 190대 이고, 이용하는 학생은 만507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질문하신 "연구원에서 발간된 각종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며는 (책을 들어 보이며)이런 책들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읽는 자료들입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읽는 자료입니다.

또 교사들만이 쓰는 교사용, 이런 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단히 정들여서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용 읽기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교과시간, 특별활동, 진로교육 관련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용 자료는 선생님들 연수 자료,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활용도와 '91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도는 책별로 몇 명이 몇 번을 읽었는

가, 하는 빈도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많이 읽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다만 이렇게 책이 깨끗하게 있으며는 한 번도 안 읽은 것이고, 이 책이 좀 구겨지고 많이 뒀다, 이렇게 되며는 많이 활용을 한 걸로 간주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번째.

학교별로 매주 금요일날 연구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 상호간에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 하는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교육청에서는 장학협의회에 학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또 실제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1년에 두번을 시·군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보충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지금 제가 두가지 질문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돼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버스 문제는 우선 학생들의 인명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버스운행을 하는 데는 점점더 대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뭔가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 학생, 소위 스쿨버스는 누가 봐도 저건 "스쿨버스다." 바로 알수 있는 어떠한 색깔로 하나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방차가 빨강색 지나가며는 '불났다, 어느 차든지 빨리 피해 주어야 되겠다, 빨리가도록 해주어야 겠다.' 이런 관념은 지금 누구든지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싹들이, 우리의 희망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녀들이 타고 있다고 하는 그 차는 '누구든지 빨리 빨리 안전하게', 이렇게 아주 더 심하게 하면 '그런 차부터 이렇게 존중해서 보내 주어야 겠다.'

이런 관념이 들수 있도록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우선 시작을 해 보려는 타도도 전국적으로 그런 그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색깔은 가령 황색으로 일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해 놓으려는 그 황색만 나타나면 '저건 아이들이 났다.'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모는 큰 트럭, 대형트럭을 모는 사람들도 그 차만 보면 그 옆에는 살살간다고 하는 이런 관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 생명보호의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그 현재는 유치원에 버스도 있고, 여기서 사춘 공용버스도 있고 해서 색깔이 약간 구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색깔을 통일해보자." 이래서 전체를 노란색 계통, 위에는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그 밑에 바뀌어 있는 아래쪽은 청색 계통으로 통일할 표준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려고 그럽니다.

현재있는 차는 앞으로 아마 다시 도색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행정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보충 답변)

○ 행정과장 엄갑도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병해 위원 : 예, 그런 것은 잘 협

의를 해서 아주 좋은 색으로 한다고 하려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국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어린 새싹들의 보호대책은 우리가 세워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연구원에 가서 종사하시는 그 분들의 일 한도가 이 책자 발행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하간 13종에 걸친 그 책자를 내려고 하려는 연구원에 있는 분들에 참 심열을 기울여서 이것을 되는 걸로 압니다.

꼭 그 귀중한 책자이고, 또 인력과 예산이 막대한 것이 들어 가는데, 지금 각 학교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아주 새 책이 참 많고, 특히 이 중등이 쪽으로는 책을 봤다고 하는 도장조차도 찍지 않은 책이 허다 하고, 이렇게 볼 때는 장학사님들이 일선에 나가실때 그것도 좀 챙겨보고서 요새 자꾸 읽으라고 강요해도 안될 테지만 사정도 해서 귀중한 책자가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돼야지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고, 또 이 교육장님들 회의나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도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사

실은 이런 강조는 많이 빠트리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강조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 듣도록 할까요?

○ 박병해 위원 :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됐습니까?

다음은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질문은 다양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관계관이 여러 분 있을 걸로 압니다.

보충질문은 그 관계관이 나온 그때 그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질문드리는데는 것은 전에도 가끔.....

○ 의장 김영세 : 권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 잠깐 정회를 하여야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12시 09분)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권위원님 질문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정정보고가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고일명 :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그 답변 도중에 투자신탁의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과세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회의록 정정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걸 제가 알고 있어요.

○ 의장 김영세 : 예,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점심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일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먼저번도 냈었고, 또 타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는 인문고등학교 교양과목 교사 현황입니다.

지금 인문고등학교에는 교양과목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학이라든가, 철학, 혹은

논리학, 심리학 이러한 교양과목이 설치되어서 전인교육을 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 교사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아마 제대로 구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양과목을 설치한 본 취지가 제대로 교육과정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며, 특히 또 앞으로 대학에 본고사가 있다든가, 또는 수학능력고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현재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전인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92년도 체육지원금 지원 현황은 어떤가, 각 학교에는 지정종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정종목도 있고 또 선택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 지정종목을 하자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독지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이고요.

세번째 질문은,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충자율학습 관계인데, 얼마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 교육감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지침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첫째, 그 지도비는 어떻게 부과를 시키고 있으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지도비 부과문제.

두번째는 앞으로 수학능력평가를 해서 종전과 다른 평가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며는 탈교과적이고 탈학년적이라는 그런 지도인데 보충수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보충수업시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가, 수학능력평가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의 선택 과목이라든가 모든것을 자기 선택에 의해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네번째는, 능력별 반편성은 되고 있는가.

다섯번째, 이것은 제가 질문을 미처 못드렸던 것인데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학습에 있어서 그 여학생 까지도 밤 열한시 열두시까지 이렇게 붙들어 두고서 참 학생들의 퇴교길,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열한시, 열두시까지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럴때 과연 지금 말씀드린 수학능력평가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교과서를 벗어나서 시험을 낸다고 하면서 학년을 초월해서 낸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독서를 시키는 건가, 아니면 신문을 읽게 하는 건가, 아니면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고 하는 건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을 배양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큰 질문을 드리고, 네번째는 이것도 몇번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보급 현황과 활용대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 컴퓨터가 5천800여대가 보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하는 교사가 6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지도를 하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된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다른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다섯번째는, '90년도 이후에 신규 교원 수급 통계와 그 걱정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교원수급 계획이 잘 못 세워지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등에 주로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초등에는 지금 교원수가 부족해서 이럴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중등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과라든가 무슨 과에서는 시험을 봐서 일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군특례자라고 해서 군대 갔다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게 됨에 따라서 일등을 하고도 발령을 못받고, 또 여기서 합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도 못받고 타도에도 또 응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모순적인 일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수급 계획을 보다 철저히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는, 이것도 초등에 주로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2부제 수업을 철폐함에 따라서 부작용이 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2부제 수업을 철폐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명제하에서 여러가지 시설도 부족한데도 2부제 수업을 철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저 닥치는 대로 아무데서나 이런 그 현관이라든가 낭하라든가 이런데서까

지도 하는, 시내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어떤가를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래서 좀 교실이 없으니까 현관, 남하, 복도 이런데서까지도 수업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과연 어떤 것인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교과전담제 교사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3월 초가 되면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제라는게 운영이 되는데, 이걸 선생님들이 싫어 한답니다.

거기에 뽑히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연령순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무조건 하게 되는 이러한 기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교과전담제라는 것은 국민학교 고학년 교사들이 너무나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피로를 느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기가 싫어하고 소질도 없는데 그 '연령이 젊기 때문에 한다' 이런 모순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전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대책, 가산점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초등학교도 중학교처럼 부담임제를 두면 어떨까, 주로 기피하는 원인이 소속감이 없어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이리가고 저리가는, 어떤 담임이 없음으로서

생기는 무소속감, 여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대책에 꼭 교과전담제 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느냐.

중학교서처럼 부담임제 같은것은 어떻게 도입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대안을 한번 좀 연구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는 폐교장 재산관리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폐교장에서는 나무나 꽃 같은 것을 캐가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그런 나무 정도는 모를까 기타 여러가지 중대한 어떤 재산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가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시는데 교육청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입니다.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90년 이후 초등교원 수급현

황과 그 걱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초등교원의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90년도가 186명입니다.

임용은 186명 전원을 임용 했습니다.

'91년도는 공개 전형을 해서 합격자가 154명이었습니다.

이중에 152명을 발령을 하고, 두사람은 임용을 포기하고, 포기한 두사람은 한사람은 입영을 하고, 한 사람은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92년도 현재 합격자 순위명부에 오른 사람이 76명입니다.

현재 40명 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36명은 전원이 임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의 경우 수급의 걱정성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내용은 국민학교 교과 전담교사 기피현상과 그 타개책입니다.

기피현상과 타개책 말씀드리기 전에, 왜 생겼는가, 또 현재 몇명이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사가 주당 시간이 32시간이상 하는 이런 1인당 시수 과중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25시간 정도로 조정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재 본도내에 교과 전담교사가 214명이 있습니다.

214명은 연구시범학교에 5명이 있고, 도시 대규모 학교에 14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6명씩 배정을 해서 청주시를 제외했기 때문에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하는 현상, 왜 기피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해당 교과시간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정감이 적다" 그래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시·군에 순회지도 하는 60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속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할때 자기를 낮은 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순회근무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감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카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학급 담임교사 결원시에 만일 병가를 냈다, 출장을 갔다 할 때 선생님을 보결수업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대책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순회지도 교사에 대한 출장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지금 대개가 1인당 월 3만원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속 학교 행사시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속 학교 운동회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운동회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직원체육을 한다 할때에는 소속 학교에 가서 직원체육을 하는, 이래서 소속감 결여에 대한 소의의식을 좀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표창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교과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표창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해외연수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년도에 36명중 교과전담교사를 7명을 지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해당학교장, 또는 동료들이 그 애쓰는 그 교과전담 교사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정신적인 격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전담제 시작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전담을 하는 그 선생님들이 소의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봉사할 해주는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분도 상

당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령 순으로 하는 그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대안은 없을까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 :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순회교과전담 교사는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사명의식을 갖고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큰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과전담 교사는 학급담임 희망을 간절히 합니다.

그것에 대한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부담임제 같은 것은 안될까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 : 그것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 관계관 나오세요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국장 나세웅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저희들 중등에 속하는 것이 다섯가지이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도 있고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인문고교 교양과목 교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41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21,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16, 생활경제를 전공하신 분이 2, 종교 및 교육학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2개교, 이렇게 해서 32개교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올바르게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개교만은 과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는 물리학이라든지, 이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배치가 안됐고, 주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개교는 실제로 자격증과는 좀 상치되는 그러한 교과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에 540명이라는 대폭적인 국립대학 출신들에 대한 적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에, '92년도 체육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섯가지 항목으로 간단 간단히, 2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으로써 지역교육청 11개에 천635만원을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국고가 97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21회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지원은 국·중학교 도대표 선수팀입니다.

여기에는 6천291만6천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추가지원액은 3천820만4천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회 학교간경기 교내대회 운영비에는 6천41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당 백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교당은 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 지원으로써 지역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에 2억2천942만5천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회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으로 고등학교 도대표 선수팀이 앞으로 지원할 것이 8천967만원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팀 기구 구입비 지원으로써 고등학교 8개 종목에 990만원이 지급이 되는걸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이미 지원한 금액은 3억7천279만천원이고, 앞으로 추가 지원할 것은 1억3천777만4천원이어서 총계 5억천56만5천원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충자율학습 실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보충수업비의 부담액은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 공식이 있어가지고서 참여하는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액이 균일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학교는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에 1,2학년은 월 3천원에서 3천5백원 정도입니다, 1인당.

3학년은 월 6천원에서 7천원정도.

그리고 지방 소규모 학교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월 4천원내외, 3학년은 7천원에서 8천원내외가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인원수가 적은 그런 아주 학급수에 있어서는 만원정도도 아마 부담이 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시지역은 1,2학년이 6천원에서 7천원정도, 3학년은 만원정도가 되겠고,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는 1,2학년이 만원내외가 되고, 3학년은 만원이 조금 초과되는 그런 학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과 수학능력시험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생략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보충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지시가 나갔습니다.

즉, 고등학교 입시에 있어서 수학능력평가

에 의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중학교에서 기초학력을 바꿔가지고서 고등학교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필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하급에 속하는 밑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기초학력이 담여져 있지 않는 학생들만 골라서 학력을 끌어 올리는 그러한 보충수업 체제로다가 전환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지금 강력하게 중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학교장 제량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밝히겠습니다마는 충주에 북여중학교는 이때까지 보충수업을 일절 안했습니다, 자율학습을.

최영익 교장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런데도 충주시내 모든 고등학교의 상위권을 전부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차지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보충수업은 옛날말로 노꼬리벤교 마냥 '기초학력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끌어 올리는, 학력을 끌어 올려주게 하는 그런 보충수업'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타는 자율적으로 독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수학문제 하나라도 자기가 풀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학자습·예습복습을 철저히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전환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선택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선에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국어·영어·수학을 희망을 할텐데 국어·영어·수학을 많은 학생들이 희망한다고 했을적에 그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수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그림 학교에서는 어떻게 담당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교과도 분담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별 반편성은, 이것은 뭐 정과수업에는 허용치 않습니다마는, 보충자습학습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야간에 밤 열한시 열두시까지 학교에서 데리고 있는다고 하는것은 생활지도상 여러가지 문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열시까지 그 학교의 방침에 의해서 "자습학습을 꼭 시켜야 하겠다" 하는 교장 선생은 시간의 제한을 열시까지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현황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국·중·고에 현재 지금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대수는 만4천39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bit가 5천604대이고, 16bit가 5천8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도에 보유율을 보려는 79%, 16bit는 40%, 그러니까 8bit가 반 반 8bit와 16bit가 반 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개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큰것을 좋아한다, 새것을 좋아한다 식으로다가 8bit의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bit는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8bit를 활용토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연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상인원이,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할 대

상인원이 국·중·고선생님 수가 만천375명
중에서 대상자는 6천37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0년도 이전에 받으신
분이 2천967명이고 해서 현재까지 4천954명
이 연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77.6%이고, 금년도에
천322명이 또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받는 비율은 20.7%가 되
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80% 가까운 그러한 선생님들
이 컴퓨터 교육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60시간을 받으신 분도
있고, 180시간을 받으신 분도 있고, 240시
간, 360시간 이렇게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학
교의 교육과정서부터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은 간단합니다.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컴퓨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조작,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
민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4,5,6
학년에 그것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학년에 실과시간을 이용해서
1년에 4학년은 2시간, 5학년은 4시간, 6학
년은 8시간, 그래서 3년동안에 14시간의 교

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자연과 시간에는 10시간씩
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해서 10시간.

그러니까 그 3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CAI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수과하고 자연과에 대해서 학
년별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학년에 맞는
컴퓨터의 CAI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것
을 과학교육원으로 이송을 해주면 과학교육
원에서는 각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이것을
복사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켓들을 사가지고서요, 공디스켓들을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키워넣기만 하고 자동적으로 키보드만 눌
르면서 그 학습내용이 브라운관에 비추는
그런 작동입니다.

그러한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30시간 이상만
연수를 했다고 하면 국민학교 4,5,6학년은
능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활시간에 32시간을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과정에서.

특활에, 방과 후에 남아서.

그러니까 방과 후에 남아서 특활에 임해
야 하기 때문에 좀 기피현상이 납니다.

"알면서도 모른다" 이렇게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걸로 해서 금년도서부터는 어느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든간에 초·중·고 선생님들은 전원이 다 컴퓨터 30시간 이상은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금년에 아주 초보자는 30시간, 그 다음에 30시간을 이수한 사람이 60시간, 60시간을 이수한 사람이 120시간 이렇게 이수하도록 3단계 심화과정까지 해서 이수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실과는 1학년에서 12시간, 1년에 12시간 이수를 시킵니다.

수학·과학에는 역시 그것도 국민학교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이 중학교의 과정에 맞는 CAI 프로그램을 이것을 갖다가 작동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역시 특별을 32시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컴퓨터에 관한 교육, 정보산업, 실업선택을 한 학교에 한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와 농고와 상고는 지금 상고는 거의 컴퓨터 교육이 정보처리과라고 하는 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

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고·농고에도 서서히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농고학생이나 공고학생도 컴퓨터에 대한 조작 능력이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까지 학습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도로 봤을적에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학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연수만 마쳤다고 해서 꼭 자신있게 가르친다고도 또 보장을 못합니다.

연수를 받고난 다음에 본인의 열성에 따라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년 이후 교원수급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교원수급 계획에 확보 인원을 47명 확보를 해서 43명을 임용을 해서 현재 미발령자가 4명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50명을 선발해서 188명을 임용해서 현재 62명이 미발령이고, 금년도 '92년도에는 111명이 합격을 해서 53명이 발령을 받고, 58명이 미발령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년동안에 408명중에서 284명이 발령을 받고, 124명이 미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중학교가 80학급이 증설이 됩니다.

'92학년도에 80학급이 증설이 되고, 또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서 중학교가 56명, 고등학교가 46명해서 102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시수나 여러가지 정원 관계로.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3월달 기점으로해서 한명도 증원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해서 3개년 동안에 124명이 현재 미발령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가서 좀 증원이 된다고 하려는 이 미발령자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으로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군복태자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같이 위원님들하고 걱정을 해야 할 것이 저희들 도에 내년 2월28일을 기해서 25명이 자격 상실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되고서 만 2년이 경과되었을 적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합격된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25명에 대해서는 참말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자격 상실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또 집단농성도 나올 염려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또 저희들이 무계획적인 선생님들을 선발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교육부

와에 있어서의 증원이 이것이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빚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지금 여러가지로 추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다 해서든지 25명은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수업비를 부과할 때 일선 교사들의 불평에 소지가 타당한 불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비를 지급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직접 임하는 교사보다도 관리비가 더 커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 때문에 불평의 소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관리비 지급에 대해서는 육성희 지침, 거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해서 교장선생님은 한달에 얼마정도, 교감선생님은 얼마, 그 다음에

서부과장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돼서.

되어 있는데, 작년서부터 청주시교육청을 기점으로 해서 청주시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서부과장님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카운터 그러니까 계산하시는 분, 예산집행하시는 분이나 이러한 관리수당을 절대로 받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작년서부터 청주시내에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가 돼서 지금 각 시·군에도 아마 되어 가는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관리비를 받지 말아라, 주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봅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권위원 중등교육국장한테 보충질문 없습니까?

○ 권혁풍 위원 :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김광수위원 보충질문 있으신 모양이니까, 잠깐 국장님.....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국장님 대답중에 조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북여중은 보충수업을 안해도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다른 중학교는 보충수업을

해도 성적이 나쁜데, 어떻게 해서 충주북여중만은 보충수업을 안해도 그렇게 우수하게 성적이 좋은 것인가, 그 실예가 무엇인가 하는 그 사례 좀 듣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제가 여기서 북여중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충수업 없이 자기네 학생들에 대해서 알뜰하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생명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언제 가봐도 학교 정리 정돈 상태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또 특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본인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자랑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례로다가 '보충수업은 사실상 안하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 보는 겁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나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충주북여중 교장선생님의 지도력, 또는 교육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성적이 좋았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충북교육을 중등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학교를 본 학교를 본보기 해서 그와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교장선생님의 철학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교장회의때나 또는 가끔적 저희들이 보충수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꼭 해야겠다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완전 금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열의도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것은 글썸 말이지요.

충북도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 북여중 같이 그렇게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게 하려는, 이 충북교육은 보충수업 안해도 이와 같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겁니다.

그것을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만 그 역량에 따라 있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학생 스스로가 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도록 그렇게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 의장 김영세 :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 권혁풍 위원 :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권혁풍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서는 보충수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학교장 재량에 맡기니까 하는 학교도 있고, 안하는 학교도 있다.

그럼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인데도 하고 있다"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단을 내리셔서 별로 필요성이 없으면 여러면에서 아주 금지를 시켜버리든지, 뭐 이런 용단이 필요 없을까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지금 "보충수업을 절대 하지말아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그러나 하려는 학교마다 그 학생들의 질이 천차만별합니다.

어떤 학교의 집단은 성적이 우수한 집단이 물리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저질 집단이 물리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보충수업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보충지도를 해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인도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옛날에 획일적인 그러한 방법, 그 다음에 전체가 다하는 방법, 이런것 지양하고 참말로 보충수업을 받아야 할 사람, 또 희망하는 교과, 그리고 학부형님들도 희망을 하고, 그리고 능력별로 반편성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권위원 보충질문 없으시죠?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관계관.....

○ 부의장 김광수 : 의장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시간이 가고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충수업하고도 관계가 되는것 같고, 지금 현재 특히 중·고등학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교재 관계의 실상이 어떤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 부교재에 들어가는 그 자금이 2천400억이나 든데요.

엄청난 부교재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그 부교재 활용 실상이 어떤것

인가 하는 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매년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학년초가 되며는 각 중·고등학교에 부교재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던 수학여행 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비리문제가 항상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교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과연 그래서 그렇난 부교재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는 보충지도문제, 자율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의 입시를 수학능력평가로 전환하는 근본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교재를 저희들 학교별로 조사할,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 부의장 김광수 : 그 학교마다 시·군마다 부교재 활용하는 것이 꼭 다양한 것 같아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많지요, 다양하게.

○ 부의장 김광수 : 또 그 부교재 값도 비싸요.

비싼데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교재 활용문제를 보다 더 관심

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12월달에 실시하는 고교 수학능력 테스트 그 방법, 문제출제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서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이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문제출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세 : 예,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위원 질문중에 관리국에서 답변할 것이 있죠?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권혁풍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2부제 수업 철폐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학년도에 2부제 수업을 실시하던 학교는 청주교육청 관내에 용담국민학교 외 여섯개 학교였습니다.

여섯개 학교에 대해서 '92년도에는 학교를 인근에 신설하고 증축을 통해서 2부제 수업을 해소토록 방침을 정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2부제 수업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

습니다마는, 교실증축 공사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활동실이나 특별교실등을 활용함으로써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는 증축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인해가지고 이러한 불편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관이나 복도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폐교장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1일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에 폐교된 학교수는 45개교입니다.

그중에 20개 폐교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또는 임대중에 있고, 현재 활용하지 않는 학교는 25개교가 있습니다.

이중 8개교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상주시켜서 전담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11개 폐지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택에 기능직이 거주토록 하고, 본교에 출·퇴근 하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임에게 관리비를 주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목의 도난이나, 시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관상수 도난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본교에 도난을

방지해서 옮겨 심은것이 잘못 전달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폐교 되려는 중요한 비품이나 수목등은 인근 국교나 인근 학교로 옮겨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관리국 소관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

없으시죠 ?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신설 야영장

위치를 직접 확인하였습시다마는, 아울러 충북학생야영장을 방문한 것을 끝으로 직속 기관에 대한 방문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방문결과를 참고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그간의 궁금함이 해소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일 통과시킨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의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0명(김사수위원 불참)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헌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9 回 忠 淸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2. 4. 27 - 4. 29(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4. 27(월) 15:3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상정 및 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상정 및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4. 27 - 4. 29. (3일간)
4. 28(화)	휴 회	※ 직속기관방문 - 충북학생종합 야영장 ※ 신설 야영장 현지답사 - 음성학생야영장 및 동 야영장 분원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p>4. 29(수) 11:00</p>	<p>【 제2차 본회의 개의 】</p> <p>(의안 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p>【 제2차 본회의 산회 】</p> <p>※ 폐 회</p>	

(별첨 2)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8- 4
--------	--------	---------

제출년월일 : 1992.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이 없는 음성군에 음성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1992. 3. 1자로 폐교되는 맹동국민학교 봉동분교장과 원남국민학교 조촌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코자 음성군 맹동면 봉동리 335 번지와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 번지에 '음성학생야영장' 및 '음성학생야영장조촌분원' 을 설치하고자 함.

3.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제1 항 (교육기관의 설치)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제2 항 (설치 승인) 및 교육부 승인공문 교행 01210 - 104 ('92. 2. 8)

다. 청소년육성법 제12조 (시설의 설치 운영)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기타 참고사항 : 별첨

가. 음성학생야영장 설치 계획서

나. 관계법령 발췌서

다. 음성학생야영장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라. 예산조치사항 : 음성학생야영장 설치 계획서 참고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충청북도 학생종합야영장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4번지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172번지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학현리 산 18 - 36번지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6번지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불한리 643번지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 - 1번지
괴산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2번지
음성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335번지
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안)																																																				
제1 조 (목적) 생략	제1 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2 조 (명칭 및 위치) 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 조 (명칭 및 위치)																																																				
제3 조 - 제15조 생략	제3 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별 표 1]	[별 표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td> <td>주소 생략</td> </tr> <tr> <td>중원학생야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제천학생야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옥천학생야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영동학생야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정천학생야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피산학생야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body> </table>	명칭	위 치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주소 생략	중원학생야영장	'	제천학생야영장	'	옥천학생야영장	'	영동학생야영장	'	정천학생야영장	'	피산학생야영장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음성학생야영장</td> <td>충북 음성</td> </tr> <tr> <td></td> <td>군 맹동면</td> </tr> <tr> <td></td> <td>봉동리 335</td> </tr> <tr> <td></td> <td>번지</td> </tr> <tr> <td>음성학생야영장</td> <td>충북 음성</td> </tr> <tr> <td>조촌분원</td> <td>군 원남면</td> </tr> <tr> <td></td> <td>조촌리 549</td> </tr> <tr> <td></td> <td>번지</td> </tr> </tbody> </table>	명칭	위 치	음성학생야영장	충북 음성		군 맹동면		봉동리 335		번지	음성학생야영장	충북 음성	조촌분원	군 원남면		조촌리 549		번지
명칭	위 치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주소 생략																																																				
중원학생야영장	'																																																				
제천학생야영장	'																																																				
옥천학생야영장	'																																																				
영동학생야영장	'																																																				
정천학생야영장	'																																																				
피산학생야영장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명칭	위 치																																																				
.																																																				
.																																																				
.																																																				
.																																																				
.																																																				
.																																																				
.																																																				
음성학생야영장	충북 음성																																																				
	군 맹동면																																																				
	봉동리 335																																																				
	번지																																																				
음성학생야영장	충북 음성																																																				
조촌분원	군 원남면																																																				
	조촌리 549																																																				
	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학생야영장(가칭) 설립 계획서

=====

1. 기관명 : 음성학생야영장 (가칭)
2. 설립자 : 충청북도교육감
3. 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동리 335번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
4. 목적 : 학생야영·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며, 협동·봉사·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5. 거리 : 봉동 → 조촌간 6Km (이동야영지로 알맞음)
6. 개장 예정일 : '92. 6. .
7. 사업계획

가. 기존시설현황

- 1) 부지 : 19,031 m²
 - 봉동 : 7,150 m²
 - 조촌 : 11,881 m²
- 2) 건물 : 1,752 m² (교실 - 1,217 m², 기타 건물 - 539 m²)
 - 봉동 : 867 m² (교실 6칸 및 기타 건물)
 - 조촌 : 885 m² (교실 8칸 및 기타 건물)

나. 시설부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숙소, 관리실 강당 등 개조	급수대,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극기, 모험 훈련장 설치	수상, 기타 교육시설	계
'92년도	70	20			11	101
'93년도	30	30		30	17	107
'94년도		10	60	20	11	101
'95년도					52	52
계	100	60	60	50	91	361

다. 예산확보 방안

- 1) 확보예정액 : 225백만원 (읍성교육청,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2) 부 족 액 : 136백만원 (자체예산 확보 예정)

8. 운영계획

- 가. 이용대상 : 국·중·고·대학생 및 기타
- 나. 1회 수용 가능 인원 : 200명
- 다. 연간 실시예정 인원 : 6,000명
- 라. 읍성군내 학생현황 : 12,185명 (국 - 8,039명, 중 - 2,832명, 고 - 1,315명)

9. 직원 조직

구	분	직	급	인원수
야영장	장	교육연구사		1
서	부	행정직	7급	1
교관	요원	별정직	8급	1
관리	요원	기능직	10동급	2
계				5

10. 교통 편의 및 대책

- 가. 제1일, 조촌으로 입소 방법 :
 - 읍성 → 조촌 16Km 포장도 (차편으로 15분 거리임)
 - 읍성 시내버스가 3회 왕복 운영하여 교통이 편리함.
- 나. 봉동에서 피소방법 : 읍성 → 봉동 20Km, 16Km만 포장도로이나 '92년 말에는 포장 완공 예정이며, 1일 3회 시내버스 운행 (원남 - 봉동 - 덕산간)
- 다. 학교단위의 대규모 입영(100명 이상)은 차량을 대절하여 입영합이 보편적임.
- 라. 따라서, 야영장 이용학생의 수송에는 별 문제가 없겠음.

陰城學生野營場位置圖



35° 00'

127° 39' 30"

관계법령 (부분) 발췌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1. 3. 8

법률 제4347호]

-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 소 년 육 성 법

[1987. 11. 28.

법률 제3973호]

- 제12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치·운영할 수 있다.

교 육 부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교육부 / 전화(720-3316)

/ 전송(736-3402)

문서번호 교협C1210-104

시행일자 1992. 2. 8 (년)

(경유)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선결	교육감	지	
접	일자 시간 92.2.13	결	부교육감
수	번호 441	재	정교육국
처리과	사회교육체육과	공	민교육정책
담당자		람	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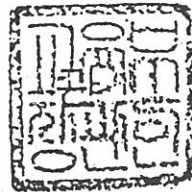
제목 교육기관 설치 승인

1. 사회 02134-71 ('92. 1. 22)호로 제출한 "음성학생야영장" 설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합니다.

2. 다만, 기관 하부조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할 경우 조례(안)을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될 요하므로 정원 확보 수준이 가변적이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개장시기와 최소한의 운용인력 등을 적절히 판단하여 소요정원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음성학생야영장 설치승인서 1부. "끝"

교 육 부 장



보통교육국장 전결

음성학생야영장 설치 승인서

구 분	승 인 내 용											
1. 목 적	<p>학생야영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며,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p>											
2. 명칭, 위치 및 시설규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명 칭</th> <th style="width: 35%;">음성학생야영장</th> <th style="width: 50%;">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th> </tr> </thead> <tbody> <tr> <td>위 치</td> <td>충청북도 음성군 맹등면 통등리 335</td> <td>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td> </tr> <tr> <td rowspan="2">시 설 규 모</td> <td>부 지 7,150㎡ (2,163평)</td> <td>11,881㎡ (3,594평)</td> </tr> <tr> <td>건 물 867㎡ (262평)</td> <td>885㎡ (269평)</td> </tr> </tbody> </table>	명 칭	음성학생야영장	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등면 통등리 335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	시 설 규 모	부 지 7,150㎡ (2,163평)	11,881㎡ (3,594평)	건 물 867㎡ (262평)	885㎡ (269평)
명 칭	음성학생야영장	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등면 통등리 335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										
시 설 규 모	부 지 7,150㎡ (2,163평)	11,881㎡ (3,594평)										
	건 물 867㎡ (262평)	885㎡ (269평)										
3. 소요예산	3억 6천만원 (자체)											
4. 개장예정 시 기	1992년 6월경											

(별첨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 - 2
----------	-------

발의년월일 1992년 4월 일
 발 의 자 이 상 일 교육위원(인)
 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가 조정(년 40일→년 50일, 필요시 의결로 10일 연장) 되었고 "의사담당관" 직명이 "의사국장"으로 변경되었기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회의일수를 년 40일에서 년 50일로 변경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 나. 정기회 시기(매년 11월 1일 → 매년 10월 20일) 및 회기변경(10일간→15일간)
(안 제4조 제2항, 제3항)
- 다. 각조의 "의사담당관" 직명을 "의사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항, 안 제33조 제1항 안 제67조 제2항)

3. 참고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2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1항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회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0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 정기회의 회기는 15일,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④ 회기의 연장은 의결로써 이를 정하되,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한다.

⑥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 33 조 제1항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한다.

제 67 조 제2항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생략)	제 1 조(현행과 같음)
제 2 조(등록 등) ①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u>의사담당관에게</u> 제시하고 등록한다.	제 2 조(등록 등) ① <u>의사국장에게</u>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의</u> <u>의사국장이 위원</u>
② 생략	
③ <u>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u>	
다만, <u>교육위원의</u>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u>의사담당관이 교육위원</u>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 3 조(생략)	제 3 조(현행과 같음)
제 4 조(회기) (신설)	제 4 조(회기) ① <u>위원회의 회의는 년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u> ② ----- <u>매년 10월 20일</u> ----- ③ 정기회의 회기는 <u>15일</u>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u>매년 11월 1일</u> 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u>10일</u> ,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③ - ⑤(생략)	
제 5조-제 32조(생략)	제 5조-제 32조(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 33 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과, 위원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위원 및 <u>의사담당관이</u> 서명 날인한다. 이 경우 선출된 위원은 당해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 날인한다.</p> <p>② (생략)</p>	<p>제 33 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 <u>의사국장이</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34조 - 제 66조(생략)</p>	<p>제 34조 - 제 66조(현행과 같음)</p>
<p>제 67 조(방청) ① (생략)</p> <p>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u>의사담당관이</u>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 67 조(방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의사국장이</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 68조 - 제 69조(생략)</p>	<p>제 68조 - 제 69조(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